

연대보증계약증서

채권자 엘리펀드소셜대부 주식회사를 "갑"으로 하고,

연대보증인 _____을(를) "을"로 하여 갑·을 간에 다음과 같이 보증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① 을은 갑이 채무자 주식회사 가희종합개발에게 가지는 아래 제2항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가희종합개발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다.

② 갑으로부터 채무자 주식회사 가희종합개발에 대한 2018년 1월 25 일 자 대부약정서(담보목록 :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372-2번지 일대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사업장)에 따른 대출금 사십억 원 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9월 25 일 이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16 %의 이율에 의한 기본이자채권 및 기한 후 연 27.9 %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배상금 채권.

제2조 을은 채무자 주식회사 가희종합개발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갑으로부터 전조 기재의 금액범위 안에서 청구를 받았을 때는 1주간 이내에 그 청구 받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상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갑·을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한다.

2018년 1월 19일

채권자(갑) 엘리펀드소셜대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준균



주소 :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, 1803호(역삼동)

연대보증인(을) _____



주소 : _____

주민번호 : _____